

#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6
----------	--------

제출연월일	2006. 3. 7.
제출자	거창군수

## ■ 개정이유

- 읍·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정비 (안 제1조~제7조)
  -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 · “읍·면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안 제17조, 18조, 20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개정(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2711호)

#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제3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단서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시민”을 “군민”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을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을 “해당 읍·면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당해 읍·면”을

“해당 읍·면”으로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매년도 개시”를 “임기 개시전”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읍·면 사무소.....	제1조(목적)..... .....읍·면.....
제2조(정의)..... 1. ....읍·면 사무소..... 2. 생략	제2조(정의)..... 1. ....읍면..... 2. 현행과 같음
제3조(원칙)..... 3. <u>읍·면 사무소별</u> .....	제3조(원칙)..... 3. <u>읍·면별</u> .....
제4조(설치 등)①.....다만..... ..... <u>읍·면 사무소</u> ..... ②생략	제4조(설치 등)①.....다만..... ..... <u>읍·면</u> ..... ②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①----- 1.~4.생략 5. ----- <u>시민교육기능</u> ②... <u>당해 읍·면 사무소</u> ..... ③생략	제5조(기능)①----- 1.~4.현행과 같음 5. ----- <u>군민교육기능</u> ②... <u>해당 읍·면</u> ----- ③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 <u>읍·면 사무소</u> ..... ②... <u>읍·면 사무소별</u> ..... ③..... ..... <u>당해 읍·면사무소</u> ..... ④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 <u>읍·면</u> ..... ②... <u>읍·면별</u> ..... ③..... ..... <u>해당 읍·면</u> ..... ④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①----- <u>프로그램 운영</u> (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 은.....	제7조(운영)①----- <u>프로그램 운영</u> (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행	개 정 안
<p>②~③생략</p> <p>④.....<u>당해 읍·면사무소</u> <u>의 읍·면장</u>.....</p> <p>⑤~⑥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③현행과 같음</p> <p>④.....<u>해당 읍·면장</u>..... .....</p> <p>⑤~⑥현행과 같음</p> <p>⑦<u>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u> <u>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u> <u>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u> <u>여야 한다.</u></p>
<p>제11조(이용 등)①~②생략</p> <p>③<u>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u> <u>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u> <u>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u> <u>할 수 있다.</u></p>	<p>제11조(이용 등)①~②현행과 같음</p> <p>③<u>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u> <u>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u>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u> <u>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④생략</p> <p>제15조(설치)<u>읍·면 사무소</u>..... .....<u>읍·면 사무소</u>..... .....</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④현행과 같음</p> <p>제15조(설치)①<u>읍·면</u>..... .....<u>읍·면</u>..... .....</p> <p>②<u>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분과위</u> <u>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u></p>
<p>제17조(구성 등)①<u>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u> <u>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u> <u>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u> <u>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u> <u>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u> <u>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u></p> <p>②-----<u>당해 읍·면사무소</u>----- .....<u>선출된 후보자</u>.....</p>	<p>제17조(구성 등)①<u>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u> <u>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u> <u>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u> <u>수 있다.</u></p> <p>②-----<u>해당 읍·면</u>----- -----<u>선정된 자</u>.....</p>

